



보험료 비교 사이트에 대한 모집 규제 적용 여부 검토

백영화 연구위원

-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비교·공시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하는 등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행위의 요건들을 갖춘 보험료 비교 서비스라면 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보험업법은 비교·공시의 방법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예컨대 모집 자격 없는 자가 비교·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해야 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을 비교·공시해야 함
 - 이러한 요건들을 갖춘 비교·공시 행위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로서 규제되지 않음
-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행위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료 비교 사이트의 구성 및 게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모집 행위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비교·공시는 가망고객에게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판매 권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원래는 모집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보험업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교·공시 행위에 한해서 특별히 모집 행위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고,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교·공시의 경우에는 모집 행위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함
 - 예컨대, 다수의 보험상품을 정렬하고 특정 상품을 우선하는 표시를 함에 있어서 정렬 순서에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보험료 비교 사이트 운영자의 주관이나 판단이 개입한 경우 등이라면 모집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임
-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단순한 비교·공시 행위가 아니라 그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음
 - 보험료 비교 서비스의 실질이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됨
 -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료 비교 서비스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데 보험회사가 그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이나 기초서류 준수 의무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1. 검토배경



- 최근 보험료 비교 사이트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보험료 비교 사이트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그에 부합하는 다수의 보험상품의 보험료 비교 정보를 게시하고, 나아가 고객이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많음
 - 이러한 서비스는 가망고객에게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망고객을 보험회사 등으로 유입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판매 권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험 모집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음
 - 한편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행위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데,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이러한 비교·공시 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을 것임
 - 보험 모집 행위인지 아니면 비교·공시 행위인지에 따라 보험업법상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보험업법이 보험 모집 행위 및 비교·공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함

2. 보험 모집 행위 및 비교·공시 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



가. 보험 모집 행위

-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보험설계사, ② 보험대리점, ③ 보험중개사, ④ 보험회사의 임·직원¹⁾으로 제한되며, 그 외의 자는 보험 모집 행위를 할 수 없음¹⁾

1)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며, 이러한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됨
- 이처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한 것은, 보험상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보험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보험 모집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음(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 특별이익 제공 금지 등)
-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임

■ 보험업법상 보험의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하며²⁾, 여기에는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 행위, 보험 가입 유도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체의 사실행위를 말하며,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는 보험대리점 등 대리인이 본인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고 그 경우 계약 체결의 효과가 보험회사에 직접 귀속됨
- 보험 모집 행위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등 보험계약의 유인 행위와 보험상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 내용 설명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봄³⁾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서는, 어떠한 행위의 실질이 보험 모집인지 단순 광고인지를 구분함에 있어, 보험계약을 직·간접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개별적 행위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⁴⁾
- 또한 지인 소개나 추천 등과 관련해서, 보험의 모집 행위는 잠재적인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일련의 보험상품 판매 활동으로서 잠재적 보험계약자를 소개하거나 그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였음⁵⁾

2)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3) 보험 모집 행위의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음(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3구합62367 판결)

원칙	“어떠한 행위가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중개 또는 대리하는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보험 모집 행위의 유형	①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등 보험계약의 유인 행위 - 보험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행위 ② 보험상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 내용 설명 행위 -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약관 등에 대한 내용 설명, 보험계약 청약서의 내용 및 기재사항 설명, 보험료의 산출과정 및 내용 설명,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설명 등

4) 금융위원회 2017. 6. 15. 법령해석회신, 2017. 7. 26. 법령해석회신 등

나.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 행위

■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모집이라는 개념과 별도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음

- 우선, 보험협회는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공시함⁶⁾
-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음⁷⁾
 - 위 보험업법 조항에 따라 하위 규정에서는 보험협회 이외의 자의 비교·공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아닌 자가 비교·공시를 하는 경우도 전제하고 있음⁸⁾

■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의 모집 행위가 금지되는 것과는 달리, 보험 모집 자격이 없어도 비교·공시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데, 다만 보험업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규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 보험업법에서는 비교·공시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교·공시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음
 -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비교·공시하는 경우, 또한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외의 자(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가 비교·공시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⁹⁾

〈표 1〉 보험협회 외의 자에 의한 비교·공시에 대한 규제 내용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의 비교·공시	•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비교·공시할 것 • 자료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협회의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할 것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의 비교·공시	•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것 •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 •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5) 금융위원회 2015. 4. 30. 법령해석회신

6) 보험업법 제124조 제2항

7) 보험업법 제124조 제4항. 보험협회의 비교·공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제성을 띤 것인 반면, 보험협회 이외의 자의 비교·공시는 임의적인 것임

8) 즉,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5항에서는 “협회,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려는 자”를 “보험 상품 비교·공시기관”이라 칭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서,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비교·공시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함

9)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3

	•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 비교·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에 대한 내용을 비교·공시할 것
--	--

■ 비교·공시 행위는 모집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험업법의 체계에 의하면 일정한 제약하에 이루어지는 비교·공시 행위에 대해서는 모집 행위로서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임

- 비교·공시 행위는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판매 권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모집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 그런데 보험업법은 모집 자격 없는 자의 비교·공시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공시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모집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보험업법이 모든 형태의 비교·공시 행위에 대해 모집 행위로 규율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들을 갖춘 비교·공시 행위에 한해서만 모집 규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표 1>에서 본 것처럼, 보험업법상 모집 자격 없는 자에 의한 비교·공시의 경우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것과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비교·공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
 - 비교·공시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천에 의한 비교·공시가 아니라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객관적·중립적인 정보 제공 기능을 한다고 보아 특별히 모집 행위 규제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이해됨

3. 보험료 비교 서비스의 보험 모집 행위 해당 여부¹⁰⁾



■ 보험업법에서 정한 규제 사항들을 모두 준수하고 행해지는 보험료 비교 서비스라면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로서 규제되지는 않을 것임

10) 만약 보험료 비교 사이트 내에서 직접 보험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즉,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비교 사이트 내에서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이는 보험 모집에 해당함이 비교적 명확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보험료 비교 사이트에서 비교 정보 및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사이트 링크만을 제공할 뿐 해당 사이트 내에서 보험계약의 직접 체결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살펴보고자 함

- 현행 보험업법의 체계에 의하면, 보험업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들을 모두 갖춘 비교·공시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모집 행위로 규율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도 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대해 보험 모집이 아니라고 해석한 사례들이 있음

〈표 2〉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

구분	유권해석의 내용	
2018. 2. 2. 법령해석회신	질의	법인대리점 운영 차량 유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복수 보험사의 CM 자동차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산출·비교 서비스 제공을 하여 보험사 홈페이지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업무는 보험 모집 광고 또는 보험 모집 중 어느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답변	복수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비교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험사가 아닌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수 있음
2018. 12. 18. 법령해석회신	질의	중고차 홈페이지 내에서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은 평균보험료 정보를 제공하고,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연결하며, 이를 통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개별 고객을 위해 보험가입을 위한 기본적인 차량정보를 손해보험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답변	- 복수 보험회사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평균보험료를 비교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협회가 아닌 자가 비교·공시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수 있으므로 협회가 아닌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평균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음 - 중고차 홈페이지에 보험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가입희망자 등에 대해 차량사항에 대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행위는 모집 행위로 볼 수 있음

■ 만약 보험업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비교·공시의 경우라면,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료 비교 사이트의 구성이나 게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 모집 행위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하는 등 보험업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갖춘 비교·공시 행위에 한하여 특별히 모집 행위 규제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보험업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비교·공시(예컨대,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이 아니라 제휴 계약을 체결한 일부 보험회사들의 상품에 대한 비교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 비교·공시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천이 개입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보험 모집 행위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료 비교 사이트의 구성이나 게시 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특정 보험 상품의 추천 및 가입 권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
 - 예를 들어, 보험료 비교 사이트 운영자의 주관·판단이 개입하여 특정 보험상품을 추천하거나 우선하

는 듯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 보험상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이나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다수의 보험상품을 정렬하고 특정 상품을 우선하는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정렬 순서에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등이라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임

4. 추가 쟁점 및 고려 사항



-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단순한 비교·공시가 아니라 그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보험회사가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가 아닌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보험업법상 다양한 사항이 문제될 수 있음

-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보험 모집 자격 없는 자가 제공한 경우와, 보험 모집 자격 있는 자가 제공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임

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험 모집 자격 없는 자인 경우

- 보험료 비교 서비스의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보험회사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됨

-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함¹¹⁾
-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함¹²⁾
 - 이처럼 보험회사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대해 대가(광고비 명목이라고 하더라도)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11)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12)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3호

나. 서비스 제공자가 보험 모집 자격 있는 자인 경우

■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 이슈는 없지만,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요건들을 준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보험업법에서는 비교·공시 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보험대리점 등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보험 모집의 일환으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
 - <표 1>에서 본 것처럼,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에서는 모집종사자가 비교·공시를 하는 경우에
 - ①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해야 하고, ② 자료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③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협회의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래 보험대리점 등은 모집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보험 모집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료 비교도 보험 모집의 일환으로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험대리점이라 하더라도 비교·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위 보험업감독규정상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임
 - 특히 위 ③요건과 관련해서, 보험대리점이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들을 비교·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들만을 비교·공시함에 있어 반드시 보험협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음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의 경우라도 비교·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비교·공시 행위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임

〈표 3〉 보험대리점의 비교 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

구분	유권해석의 내용	
2016. 2. 25. 법령해석회신	질의	법인보험대리점이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CM 전용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비교·검색하여 보험계약 체결까지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구축·운용하는 방식으로 모집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답변	보험대리점은 그 모집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청약자가 다수의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을 비교·검색하여 보험계약 체결(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까지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구축·운용하는 방법으로 모집업무를 할 수 있음. 다만,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안내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4조 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4항13)에 따라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고 자료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13)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4항은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 제1항과 동일한 내용임

●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라면 비교·공시도 보험 모집의 일환으로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모집종사자의 비교·공시에 대한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입법이나 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특히 보험대리점이 자신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들만을 비교·공시함에 있어 반드시 보험협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음
- 만약 소비자가 객관적·중립적인 정보 제공으로서의 비교·공시와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면, '모집을 위탁한 일부 보험회사의 상품만 비교·공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보험료 비교 서비스의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데 보험회사가 그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가 아닌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이나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험 모집 자격 있는 자에게 모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 위탁이나 대가 지급의 이슈는 없음
- 그러나 보험대리점에 대해 원래는 모집수수료로 지급해야 할 것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¹⁴⁾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 내용과 합치하여야 함¹⁵⁾
 - 실질은 모집수수료인데 보험회사가 이를 모집수수료가 아닌 광고비로서 집행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관련한 기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 특히 CM(Cyber Marketing) 상품에 대한 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CM 상품의 경우 모집수수료 없이 상품을 설계하였을 것이므로,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실질은 모집수수료에 해당한다면 이것이 기초서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14)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함

15)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3항

5. 결어



■ 보험료 비교 서비스는 비교 방법과 내용 등에 따라 단순한 비교·공시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보험업법상의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음

-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하는 등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행위의 요건들을 갖춘 보험료 비교 서비스라면 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행위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보험료 비교 서비스의 경우에는(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이 아니라 제휴 계약을 체결한 일부 보험회사들의 상품에 대한 비교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 등),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료 비교 사이트의 구성이나 게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모집 행위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만약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단순한 비교·공시 행위가 아니라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보험료 비교 서비스의 실질이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도 보험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해당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됨
-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료 비교 서비스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데 보험회사가 그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이나 기초서류 준수 의무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kiri**